

기관운영감사

# 감 사 보 고 서

-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

2019. 7.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7
(2) 수증계 비율 제도 운영 불합리 (통보)	13
(3) 시청점유율 조사사업 운영 부적정 (통보)	19
(4) 결합판매서비스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제공 관련 조사·단속업무 부적정 (주의·통보)	26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1
(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5
(7)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41
(8) 「방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가산 부적정 (주의)	44
(9)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부적정 (주의)	47
(10)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51

- (11)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4
- (12)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 부적정(주의)·57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사업 및 조직·인사 등 기관운영에 대하여 2010년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방송·통신의 융합, 신규 서비스의 등장 및 이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의 증가 등 방송·통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과 세출예산·기금 지출의 적정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2019. 3. 6.부터 같은 해 3. 26.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9. 3. 26.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답변서에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7. 25.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sup>1)</sup>

### 1.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 진흥 및 정책 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 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과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2. 조직 및 인력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이상 정무직)으로 구성되고 사무처에 3국 1관 20과를 두며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두고 있고, 인원은 [표 1]과 같이 정원 270명 대비 현원 274명(2019년 2월 기준)이다.

[표 1] 정원 및 현원(2019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270	5	5	5	17	17	76	145
현원	274	5	5	5	17	17	83	142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예산 및 기금 운용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은 [표 2]와 같이 일반회계 323억 원, 방송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수입 포함) 1조 2,579억 원, 계 1조 2,902억 원으로 2018년 계 8,347억 원 대비 54.6%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금 내 자금 전출입(3,030억 원 증가, 235.4%)과 방송사 기금 분담금(1,519억 원 증가, 126.2%)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표 2] 세입·기금수입 예산 현황(2016~2019년)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559	308	312	318
	기타경상이전수입등	4	4	5	5
	소계	563	312	317	323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분담금등 자체수입	7,777	6,263	5,792	7,311
	기금 전출입	3,438	3,571	2,238	5,268
	소계	11,215	9,834	8,030	12,579
합계		11,778	10,146	8,347	12,902

주: 기금수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3]과 같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27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 1,952억 원, 계 2,579억 원으로 2018년의 2,386억 원 대비 8.1%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295억 원, 47%)와 사업비(323억 원, 53%)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액이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세출·기금지출 예산 현황(2016~2019년)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556	545	564	627
방송통신발전기금	1,717	1,848	1,822	1,952
합계	2,273	2,393	2,386	2,579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4. 주요 보조사업 수행기관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표 4]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 모니터링·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각각 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관련 사업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보조사업 수행기관 현황

(단위: 명, 억 원)

기관명	주요사업	근거법률	인원	예산(2018년)	
				총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모니터링,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8	316	316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미디어 교육·홍보	「방송법」	224	346	30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청점유율 조사 등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01	1,504	105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5]와 같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5]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주의	통보
건수	13	10	3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도입하면서 통신사업자가 필터링 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업무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접속차단방식 시행 전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야기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결합판매서비스 판매 시 경제적 이익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단속하면서
  - 경품 지급 상한 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하지 않고 내부절차문서로 마련·운영하여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부절차문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유발하고
  - 논란이 유발된 지 2년여가 지난 2019년 3월에야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조사·단속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 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보안접속(https)을 사용하는 인터넷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음란물이나 사행행위 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하 “불법사이트”라 한다)를 접속차단하기 위하여<sup>2)</sup> 2018. 6. 25.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 2. 11. 이를 전면 시행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표]와 같이 인터넷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서버에 연결되기 전 인증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도메인 정보<sup>3)</sup>를 확인하여 불법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방식으로, 종전 URL 차단방식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접속뿐 아니라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2) 2008년 도입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은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불가능함

3) 인터넷상의 IP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한 주소(예. www.abc.com)

[표] 접속차단방식 비교

구분	DNS 차단방식(~2007년 이전)	URL 차단방식(2008년~)	SNI 차단방식
기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는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에서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관문국에 전용장비를 설치하고 불법사이트를 필터링하여 차단</li> <li>하위 디렉터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접속(https) 시에도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서버 네임을 특정하여 차단</li> <li>서비스(mail, news 등) 단위별로 차단 가능</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접속(https) 차단 가능</li> <li>차단 안내페이지 제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단 안내페이지 제공 가능</li> <li>DNS 방식에 비해 우회접속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접속(https)만 차단 가능</li> <li>DNS와 URL 방식에 비해 우회접속이 어려움</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차단 우려(도메인 네임만 일치하면 차단)</li> <li>우회접속이 용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접속(https) 차단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단 안내페이지 제공 불가</li> </ul>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sup>4)</sup>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심위는 방통위에 그 불법사이트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과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의 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방통위의 위와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 시정요구의 종류: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주 2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고, 방통위는 우회수단을 통해 접속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도입·적용<sup>5)</sup>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지도 형식으로 협조 요청<sup>6)</sup>하고 있다.

한편 구 정보통신부<sup>7)</sup>는 2008년 URL 차단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넷접속사업자에게 URL 차단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근거, 차단장비 및 설치방법 등을 정한 “해외 불법정보 차단업무 처리지침”을 마련·운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불법사이트 게시자나 유통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이고 특정 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사이트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이번에 도입한 SNI 차단방식은 종전 URL 차단방식에 비하여 차단 범위가 넓고<sup>8)</sup> 인터넷 접속 경로를 알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암호화 이전에 경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생활 등 침해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안내페이지<sup>9)</sup>가 표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필요한 장비(필터링 장비)를 구축하여야 함

6)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4항 제16호 및 제20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방통위의 업무로 규정

7) 1994년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해체되면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및 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능을 포괄하는 방통위가 설립되었음

8) URL 차단방식은 불법정보가 게재된 하위디렉터리 또는 페이지 단위(abc.com/main/hotissue/1234.htm)로 차단이 가능하나 SNI 차단방식은 서비스 단위(mail, news 등)로 차단 가능

9) 이용자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창

예상되므로 차단방식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접속차단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sup>10)</sup>(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필요한 필터링 장비 구축 등)을 주고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의 도입을 요구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차단방식의 도입 필요성 및 효과, 초래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설명하는 공청회나 시범적용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방통위는 2018년 6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5회에 걸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SNI 차단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 후 2019. 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심위에 같은 해 2. 11. 이후부터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시 URL 차단방식과 함께 SNI 차단방식을 적용<sup>11)</sup>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전면 시행하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행 과정에서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고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공개할 경우 우회 접속기술이 개발되는 등 접속차단을 회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술개발, 예산확보 관련 내부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장비를 고도화하였고, 이를 위하여 2억~4억여 원의 비용 부담

11) 접속차단 대상 불법사이트가 세부주소(URL, 예: <http://www.abc.com/about/123.html>) 단위인 경우 종전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사이트 단위(abc.com)인 경우 URL 차단방식과 SNI 차단방식을 모두 적용

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공청회 개최나 시범적용 등을 통해 SNI 차단방식 도입의 필요성이나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하여 안내·설명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sup>12)</sup> SNI 차단방식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이후인 2019. 2. 12.에서야 SNI 차단방식 도입 사실과 차단 안내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만 배포하였다.

그 결과 SNI 차단방식도 불법사이트 차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데도<sup>13)</sup> 방통위가 이를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였고<sup>14)</sup> 방통위가 새로운 접속차단방식 도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의 도입을 거부하는 사례<sup>15)</sup>가 발생하는 등 방통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sup>16)</sup>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절차 등에 관한

---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내부망에 차단 대상 불법사이트 입력, 차단기능 구현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 가능한 기계적 오류를 보완하는 등 기술점검만 시행

13) SNI 차단방식의 우회수단이 존재함

14) SNI 차단방식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26만여 명 참여)에 대하여 방통위 위원장이 2019. 2. 21.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의 도입은 필요하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답변하였음

15)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NI 차단장비를 구축하지 않았음

16) SNI 차단방식 도입 초기 ■■■이 차단 대상이 아닌 사이트를 접속차단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였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방통위와 ■■■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방통위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음

규정이 없으나 불법저작물,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도입과정에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기 전에 그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수중계 비율 제도 운영 불합리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역민방사업자”라 한다)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편성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2000. 5. 26.부터 수(受)중계 비율<sup>17)</sup>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수중계 허용비율 변경 이력**

구분 <sup>주)</sup>	2000년 ~	2001년 ~	2003년 ~	2005년 이후
1차 (○○, ●●, △△, ▲▲)	80% 이내 (20% 이상)	72% 이내 (28% 이상)	70% 이내 (30% 이상)	69% 이내 (31% 이상)
2차 (▷▷, ►►, ▽▽)		75% 이내 (25% 이상)	73% 이내 (27% 이상)	71% 이내 (29% 이상)
3차 (▼▼, ◁◁)	미(未)개국		80% 이내 (20% 이상)	77% 이내 (23% 이상)
고시 제·개정일	2000. 5. 26.	2001. 3. 23.	2003. 1. 8.	2005. 1. 22.

주: () 안은 자체편성 의무비율, 1·2·3차는 방송사업자 허가 차수 구분임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17) 자체 편성이 아닌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받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율로서 지역민방사업자가 자체 편성시간을 확보하여 지역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 (전체 편성 = 수중계 + 자체 편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방송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수중계 비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 ●●, △△, ▲▲의 수중계 비율은 채널별로 매 분기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 ▽▽, ▷▷은 100분의 71 이내, ▼▼, ◁◁은 100분의 77 이내로 수중계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방사업자에 대한 수중계 비율을 차등 운영하는 등 제한할 때에는 수중계 비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적용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근거로 적절한 수중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sup>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통위는 2000년 5월 수중계 비율을 정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도 적정한 수중계 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요소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표 1]과 같이 현재의 수중계 비율은 2005년 1월, 동일 허가차수 내에서는 동일 비율로, 허가차수 간에는 일정한 차등을 두도록 한 후 수정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18) 방통위가 수중계 비율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신유형 매체 확산 등 방송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민방의 재정적 어려움과 다른 지역방송사와의 규제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중계 제한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수중계 비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편성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7년 12월), 지역민방 편성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018년 12월)]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9. 3. 6.~3. 26.) 중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수중계 비율 결정의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 지역민방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그리고 방송사업매출액 등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2005년 이후 5개년(2005~2009년) 대비 최근 5개년(2013~2017년)의 방송사별 당기순이익은 ○○와 △△은 증가한 반면, ▲▲은 적자 전환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5개년(2013~2017년)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와 <<의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차 지역민방사업자인 ▷▷ 및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민방사업자의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방송사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05~2009년 (5개년 평균)	2013~2017년 (5개년 평균)	2005년	2017년	2005~2009년 (5개년 평균)	2013~2017년 (5개년 평균)	2005년	2017년
1차	○○	6,692	7,053	6,974	9,503	6,758	8,163	7,565	9,349
	●●	4,759	2,137	7,064	2,722	5,836	3,297	5,661	3,104
	△△	3,874	2,055	7,040	4,138	3,964	4,579	6,358	8,062
	▲▲	2,684	-697	3,129	523	3,591	-219	3,723	1,211
	평균	4,502	2,637	6,052	4,222	5,037	3,955	5,827	5,432
2차	▷▷	1,498	-436	2,308	-1,522	1,810	166	780	-1,331
	▶▶	2,816	537	3,945	1,230	2,834	556	3,828	735
	▽▽	1,060	224	2,422	-45	1,088	596	1,843	1,768
	평균	1,791	108	2,892	-112	1,911	439	2,150	391
3차	▼▼	1,926	1,021	2,891	2,136	1,678	1,519	2,004	2,690
	<<	2,791	298	3,023	-221	3,303	1,276	3,249	1,782
	평균	2,359	660	2,957	958	2,491	1,398	2,627	2,236
전체	평균	3,122	1,355	4,311	2,052	3,429	2,215	3,890	3,041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최근 5개년(2013~2017년) 방송사업매출액 증감 추세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 등 3개 지역민방사업자는 증가한 반면, ○○ 등 6개 사업자는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4개년<sup>19)</sup>(2009~2012년) 및 최근 4개년(2014~2017년) 방송사별 평균 방송사업매출액은 [표 4]와 같이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이 2차 ▶▶와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차수별 역전 현상도 발생하였다.

[표 3] 지역민방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증감률

(단위: %)

방송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률
○○	-8.8	4.9	2.9	-8	7.5	-0.3
●●	-8.4	4.1	-2.1	-10	2.1	-2.86
△△	-6.3	-3.9	14.3	-10.6	-5.8	-2.46
▲▲	-0.4	-3	1.7	-13.1	5.5	-1.86
▷▷	-10.8	-6.1	-2.9	-5.6	9.2	-3.24
▶▶	-0.5	-0.1	-1.2	-8	1.5	-1.66
▽▽	1.2	-3.2	22.1	-21.8	46.6	8.98
▼▼	-0.4	-7.4	2.1	-9.3	20.3	1.06
◁◁	1.5	-9	1.9	-3.1	15.5	1.36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통위) 재구성

[표 4] 지역민방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방송사	방송사업매출액	
		2009~2012년	2014~2017년
1차	○○	42,117	41,684
	●●	27,565	25,907
	△△	28,048	28,503
	▲▲	24,409	23,629
	평균	30,535	29,931

19) 2009년부터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방송사별 방송사업매출액을 공표함

구분	방송사	방송사업매출액	
		2009~2012년	2014~2017년
2차	▷▷	21,298	19,919
	▶▶	16,709	17,400
	▽▽	14,622	16,675
	평균	17,543	17,998
3차	▼▼	18,734	19,066
	◁◁	13,015	12,969
	평균	15,875	16,018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통위) 재구성

위와 같이 각 지역민방사업자들의 경영상태가 수중계 비율 결정 당시인 2005년과는 크게 달라지고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채널의 증가, OTT(Over the Top) 서비스<sup>20)</sup> 등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출현 등으로 방송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는데도 수중계 비율을 허가차수별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중계 비율 판단기준이 없어 사실상 수중계 비율을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나 변화하는 방송환경 등에 맞게 조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sup>21)</sup>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수중계 비율이 지역민방사업자의 방송매출 감소 등 방송시장 변화 및 「방송법 시행령」상 규정된 경영상태와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송환경 변화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중계 제도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21) 2005년 1월 개정된 고시안 마련을 위해 2004. 10. 25. 개최된 제47차 구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의결 안건 자료에 따르면 지역민방사업자의 자체편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차수별 수중계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방송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중계 비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시청점유율 조사사업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2009. 7. 31.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점유율<sup>22)</sup>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보조사업 수행기관<sup>23)</sup>으로 지정하여 시청점유율 규제 시행에 필요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2018년 사업비 4,916백만 원)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방송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sup>24)</sup>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

22)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23)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주)가 조사 수행

24)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sup>25)</sup>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해 2018년 49억여 원 등 [표1]과 같이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4,000가구에 피플미터기<sup>26)</sup>를 설치하여 방송채널 551개의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다.

[표1] 시청점유율 예산 현황(2014~2018년)

(단위:백만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3,758	4,570	4,570	5,175	4,916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시청점유율 조사업체인 ◀◀(주)는 방통위가 실시하는 시청점유율조사와 별개로 방송사업자·광고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시간대별 시청률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위 시청률 조사패널(2,800가구)을 방통위가 실시하는 시청점유율 조사패널(4,000가구)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추이를 보면 [표2]와 같이 주식회사 ◇◇이 2011년 최고치인 18.374%를 기록한 후 2017년에는 12.465%로 5.909%p 감소하였고, 2017년도 시청점유율이 10% 이상인 방송사업자가 주식회사 ◇◇(12.465%)과 ◆◆주식회사(11.000%) 두 곳에 불과한 등 제도 도입 이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초과하는 방송사업자가 발생한 바 없으며, 방송채널이 갈수록 다양<sup>27)</sup>해지는 등 사실상 특정 방송

25)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업무로 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26) 텔레비전 수상기에 장착하여 초 단위로 시청률을 측정하는 기계

27) 2010년에 227개 방송사업자가 337개 채널을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271개 방송사업자가 397개 채널을 운영

사업자가 시청 점유율 상한선을 초과하는 등 방송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2] 주요 방송사업자 전체 시청점유율 현황

(단위: %)

방송사업자	전체 시청점유율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주)◇◇	17.784	<b>18.374</b>	16.022	16.778	15.633	16.573	14.982	<b>12.465</b>
(주)㉠㉠	13.143	11.173	11.408	9.673	9.108	9.099	8.669	8.661
(주)○○	1.966	1.551	1.630	1.391	1.266	1.192	1.107	1.108
(주)㉡㉡	10.148	9.102	8.785	9.026	9.440	9.940	9.829	8.886
(주)㉢㉢	8.584	7.380	7.878	7.810	7.490	7.267	7.727	9.453
(주)㉣㉣	-	3.771	5.874	5.350	5.776	6.678	6.624	6.056
(주)㉤㉤	3.188	2.809	3.310	3.825	4.572	5.520	5.477	5.215
(주)㉥㉥	1.764	1.736	1.776	1.611	1.718	1.739	2.160	2.492
(주)㉦㉦	-	0.033	0.777	0.959	1.184	1.352	1.824	2.187
◆◆(주)	9.718	9.168	9.384	8.881	8.713	10.605	10.982	11.000
(주)㉧㉧	2.832	3.387	2.620	2.900	2.965	2.608	2.656	2.970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텔레비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정확한 시청 점유율을 나타내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시청 점유율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시청 점유율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고 시청 점유율 조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9. 3. 6.~3. 26.) 중 방통위와 ◀◀(주)의 표본 규모에 따른 시청 점유율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별표] “2017년도 4,000가

구 기준과 ◀◀(주)의 조사가구 수인 2,800가구 기준 방송 시청점유율”과 같이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통위의 조사결과와 2,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의 조사결과의 차이가 1% 이내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 최고치가 약 12%에 불과한 등 규제기준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표본 규모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시청점유율 조사업체가 수행하는 상업용 시청률 조사결과<sup>28)</sup>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시청점유율 조사의 계속 수행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4,000가구<sup>29)</sup>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sup>30)</sup>를 계속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홈쇼핑 채널 17개, 외국방송채널 35개<sup>31)</sup>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 시장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사실상 없는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특정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청점유율 조사 직접수행에 따른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청점유율 제도의 타당성 제고 및 예산의 효

---

28) ◀◀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시청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29) 2018년 기준 고정형 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가구당 1개월 비용 26,650원

30) 방통위는 2010년 3,000가구(95% 신뢰수준 오차한계±1.79)에서 2014년 4,000가구(95% 신뢰수준 오차한계±1.5 미만)로 패널가구를 확대한 후 2019년 3월 현재까지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

31)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송출하는 채널은 시청점유율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송출하는 외국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유효적 활용을 위해 시청 점유율 조사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청 점유율 조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사수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 점유율 조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2017년도 4,000가구 기준과 2,800가구 기준 방송 시청점유율

(단위: %, %p)

방송사업자	채널	2017년도 방송 시청점유율		차이 (A-B)
		4,000가구 기준(A)	2,800가구 기준(B)	
한국방송공사	KBS1	12.747	13.590	-0.843
	KBS2	10.834	10.057	0.777
(주)◇◇	-	8.804	8.788	0.016
(주)㉨	-	5.317	5.689	-0.372
지역민방네트워크	-	1.108	1.044	0.064
	-	0.930	0.728	0.202
	-	0.743	0.578	0.165
	-	0.589	0.463	0.126
	-	0.248	0.241	0.007
	-	0.328	0.175	0.153
	-	0.213	0.144	0.069
	-	0.235	0.141	0.094
	-	0.084	0.062	0.022
	소계	4.478	3.576	0.902
한국교육방송공사	EBS1	1.935	1.826	0.109
	EBS2	0.091	0.078	0.013
-	-	0.247	0.298	-0.051
<b>지상파 계</b>		<b>44.453</b>	<b>43.902</b>	<b>0.551</b>
(주)ㄱㄱ	-	2.755	3.011	-0.256
(주)ㄴㄴ	-	5.039	4.802	0.237
(주)ㄷㄷ	-	3.992	4.416	-0.424
(주)ㄹㄹ	-	2.315	2.623	-0.308
<b>종합편성채널 계</b>		<b>14.101</b>	<b>14.852</b>	<b>-0.751</b>
(주)ㅂㅂ	-	2.377	2.820	-0.443
(주)ㄷㄷ	-	2.187	2.593	-0.406
<b>보도채널 계</b>		<b>4.564</b>	<b>5.413</b>	<b>-0.849</b>
(주)케이비에스엔(KBSN) (6개 채널)	KBSDRAMA	1.647	1.638	0.009
	KBSJOY	0.726	0.657	0.069
	KBSNSPORTS	0.579	0.627	-0.048
	KBSN Life	0.012	0.012	0
	KBS W	0.201	0.199	0.002
	KBS KIDS	0.143	0.111	0.032
<b>KBS 계열 PP 계</b>		<b>3.308</b>	<b>3.244</b>	<b>0.064</b>
-	-	1.291	1.225	0.066
	-	1.318	1.178	0.14
	-	0.003	0.002	0.001
	-	0.703	0.764	-0.061
	-	0.233	0.247	-0.014
	-	0.111	0.102	0.009
<b>-계열 PP 계</b>		<b>3.659</b>	<b>3.518</b>	<b>0.141</b>

방송사업자	채널	2017년도 방송 시청접유율		차이 (A-B)
		4,000가구 기준(A)	2,800가구 기준(B)	
-	-	0.182	0.194	-0.012
	-	1.349	1.257	0.092
	-	0.130	0.140	-0.01
	-	0.745	0.793	-0.048
	-	0.043	0.038	0.005
	-	0.616	0.566	0.05
	-	0.000	0.001	-0.001
	-	0.279	0.203	0.076
<b>-계열 PP 계</b>		<b>3.344</b>	<b>3.192</b>	<b>0.152</b>
EBS계열PP (4개 채널)	EBSEnglish	0.007	0.008	-0.001
	EBS U	0.134	0.115	0.019
	EBS플러스1	0.005	0.005	0
	EBS플러스2	0.008	0.009	-0.001
<b>EBS 계열 PP 계</b>		<b>0.154</b>	<b>0.137</b>	<b>0.017</b>
◆◆(주) (16개 채널)	-	0.059	0.060	-0.001
	-	0.051	0.054	-0.003
	-	0.898	0.831	0.067
	-	0.017	0.015	0.002
	-	0.702	0.621	0.081
	-	0.529	0.496	0.033
	-	1.467	1.351	0.116
	-	0.098	0.096	0.002
	-	0.438	0.419	0.019
	-	0.106	0.093	0.013
	-	0.642	0.591	0.051
	-	3.787	3.272	0.515
	-	0.004	0.004	0
	-	0.320	0.284	0.036
	-	0.176	0.210	-0.034
	-	0.635	0.478	0.157
<b>◆◆계열 PP 계</b>		<b>9.929</b>	<b>8.875</b>	<b>1.054</b>
-	-	0.016	0.015	0.001
	-	0.017	0.014	0.003
	-	0.143	0.168	-0.025
	-	0.001	0.001	0
	-	0.011	0.009	0.002
<b>-계열 PP 계</b>		<b>0.188</b>	<b>0.207</b>	<b>-0.019</b>

주: "PP"는 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함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결합판매서비스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제공 관련 조사·단속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결합판매서비스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및 제2항에 따르면 결합판매서비스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이하 “차별제공행위”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특정 금

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위 기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어떤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통위는 2012. 5. 18. 2011.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이에 조사한 “(주)■■■, ◆◆(주), (주)○○○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경품 등의 지급상한을 서비스별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을 고려하여 인터넷 단품 19만 원, 2종 결합(DPS) 22만 원, 3종 결합(TPS) 25만 원<sup>32)</sup>으로 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차별제공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3년여가 지난 2015. 8. 6. 통신사의 4종 결합상품의 비율이 높아지자 2012. 5. 18. 정한 위 경품 등 지급상한기준에 4종 결합시 경품상한기준을 28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내부기준)을 마련하였

32) 2011. 2. 21. “(주)■■■, ◆◆(주), (주)○○○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경품상한기준을 인터넷 단품 16만 원, 2종결합 19만 원, 3종결합 22만 원으로 심의·의결함

으나 위 제도개선안을 고시하지 않은 채, 차별제공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 조사·단속업무<sup>33)</sup>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 12. 6. [별표] “사업자별 경품 상한기준 위반 현황”과 같이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 등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경품 등 지급상한기준을 초과하였음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주)●●가 2017. 2. 9.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방통위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유발되었다.

더욱이 방통위는 2017. 10. 17.부터 2018. 7. 17.까지 “●● 결합상품 과다 경품 제공” 사안과 관련하여 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정한 경품 등 지급상한기준 초과 여부를 근거로 차별제공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또 다시 조사하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2019년 3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방통위는 경품 등 지급에 대한 소송 제기 등 논란이 일어난 지 2년여가 지난 2019. 3. 6.에서야 정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금액을 개별사업자가 결합판매 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 상하 15% 이내인 경우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

33) 차별제공행위에 대한 조사를 4회(2010년 4월, 2011년 11월, 2015년 9월, 2017년 10월) 실시

그러나 위 고시 내용에는 경품 등 차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금액의 산정기간<sup>34)</sup> 등 산정방법,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판단할 구체적인 내용<sup>35)</sup>이 없어 위 고시 내용만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 등이 차별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현재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평균 경품액 산정방식, 현금 경품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① 결합판매 전기통신사업자의 경품 차별지급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관련하여 고시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평균금액 산정기간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금지행위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고시한 후 조사·단속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4) 방통위는 평균금액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고시에 명시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음

3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판단의 대상기간,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별표]

사업자별 경품 상한기준 위반현황

(단위: 명, 건, 원)

구분		단품 (19만 원 초과)	2종 결합 (19만 원 초과)	3종 결합 (25만 원 초과)	4종 결합 (28만 원 초과)
(주)○○○	가입자	89,243	249,058	154,267	28,466
	위반건	19,432	140,080	108,680	26,880
	평균초과지급액	42,552	161,504	95,506	68,379
(주)■■■	가입자	304,270	481,026	209,225	49,891
	위반건	56,390	184,974	78,287	8,233
	평균초과지급액	43,378	79,840	76,946	138,603
-	가입자	257,483	154,835	23,075	-
	위반건	62,128	75,031	12,835	-
	평균초과지급액	114,470	143,422	134,675	-
◆◆(주)	가입자	85,311	199,714	78,874	315,457
	위반건	10,612	144,892	59,919	138,052
	평균초과지급액	40,866	154,574	160,114	67,555
-	가입자	12,093	42,798	25,419	399
	위반건	2,794	1,532	581	5
	평균초과지급액	80,725	95,150	88,723	55,773
-	가입자	35,876	52,354	25	-
	위반건	4,432	6,143	3	-
	평균초과지급액	35,669	155,945	25,735	-
-	가입자	20,429	22,299	6,221	-
	위반건	354	2,820	895	-
	평균초과지급액	17,629	60,745	46,220	-
- (계열사 4개 합계)	가입자	6,911	7,180	2,927	-
	위반건	232	248	29	-
	평균초과지급액	49,172	43,675	41,187	-
- (계열사 4개 합계)	가입자	2,509	8,530	164	-
	위반건	35	36	0	-
	평균초과지급액	33,128	7,710	0	-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조 치 기 관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용

### 1. 업무 개요

시청자미디어재단<sup>36)</sup>(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8. 3. 29.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4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직원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서류·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4. 12. 경력직 73명(기간제 계약직 13명, 무기계약직 60명), 신입직 4명, 총 77명의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017. 7. 20.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제6절(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채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 근로자로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 7. 20.)에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이들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36)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4절(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 따르면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sup>37)</sup>

위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근무 중인 자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다른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 박탈을 최소화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현재의 재직근로자를 전환채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재단은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인 2017. 7. 20. 현재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재직근로자의 전환 채용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채용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재단은 시설관리, 방송시장 모니터링, 사무보조업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면서 2017. 12. 20. 개최된 3차 회의<sup>38)</sup>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지원자격을 폭넓게 부여한다는 사유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현근로자 전환채용 원칙과 다르게 재단 설립 이후 2년 근무한 후 계약이 해지된 자 및 가이드라인 발표시

37)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다양하고,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이 고려되도록 합리적인 협의 절차 마련

38) 재단은 3차에 거쳐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1차(2017. 8. 17.), 2차(2017. 10. 27.), 3차(2017. 12. 20.)]

점 후 새로이 채용된 자를 포함한 2018. 3. 29. 현재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8. 3. 29. 경력직 73명, 신입직 4명 등 총 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실시한 후 서류<sup>39)</sup> 및 면접전형을 거쳐 같은 해 4. 12. 모니터링 분야 43명을 포함한 총 73명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였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당시 근무자로서 전환대상자이면서 서류·면접전형 결과 60점 이상을 받아 전환 적격자에 해당<sup>40)</sup>하는 A 등 2명<sup>41)</sup>은 탈락된 반면, [표 1]과 [표 2]와 같이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7. 7. 20.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은 B 등 5명과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7. 7. 20. 이후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C 등 10명을 경력직 최종합격자로 선정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정한 원칙과 달리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되었다.

[표 1]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계약만료자의 정규직 채용 명단

소속	근무직종	성명	시청자미디어재단근무기간
미디어진흥부	모니터링 (방송광고)	B	2014. 3. 4.~2016. 2. 29.
		L	2014. 3. 13.~2016. 2. 29.
		M	2015. 1. 5.~2016. 12. 31.
		N	2015. 2. 23.~2017. 2. 22.
		O	2015. 4. 1.~2017. 3. 31.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9) 경력직(퇴직자 및 채용공고일 현재 재직근로자 대상) 채용 경쟁률은 1.2:1, 신입직(고등학교 졸업 이상) 채용 경쟁률은 11.5:1

40) 서류·면접전형 시 심사위원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1) 모니터링(방송시장) 분야에서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9명 중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계약만료자 4명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3명을 제외한 2명인 A(2017. 4. 3.~2018. 4. 15.), D(2016. 1. 18.~2017. 12. 31.)

[표 2]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

소속	근무직종	성명	파견·용역계약 체결일	비고
미디어진흥부	모니터링 (방송광고)	C	2017. 8. 7.	-
		P	2017. 8. 7.	-
		Q	2017. 8. 7.	-
		R	2017. 9. 4.	-
		S	2017. 9. 11.	2018. 7. 31. 퇴사
		T	2018. 1. 8.	-
	모니터링 (방송시장)	U	2018. 1. 15.	-
		V	2018. 1. 15.	-
	모니터링 (방송광고)	W	2018. 3. 19.	-
	광주센터	미화	X	2017. 11. 1.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해당 직위의 결원이나 신규 증원 인력에 대한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업무 추진 및 관서업무 수행을 위해 2017~2018년에 업무추진비 계 6,546건, 834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한도 초과 사용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출예산 등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하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인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이용하여 관서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에 따르면 “건당 500만 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7. 2. 20.~2. 24.(5일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연수원(경기도 양평군 소재)에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심사위원 및 지원인력 등 29명의 식비(12식) 계 6,787,000원을 [표 1]과 같이 12회로 분할하여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였다.

[표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 식비 정부구매카드 결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카드결제							관서운영경비지급결의		
연번	사용일	사용시간	내역	사용자명	사용처	금액	내역	결의일	금액
1	2017. 2. 20.	19:28:05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식비	심사위원회 13명, 방송지원정책과 심사지원반11명 등 총 29명	KOBACO 연수원	638,000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식비	2017. 3. 10.	638,000
2	2017. 2. 20.	19:29:36				660,000			660,000
3	2017. 2. 21.	20:22:17				478,500			478,500
4	2017. 2. 21.	20:24:10				594,000			594,000
5	2017. 2. 22.	20:30:31				445,500			445,500
6	2017. 2. 22.	20:31:24				616,000			616,000
7	2017. 2. 22.	20:31:54				616,000			616,000
8	2017. 2. 23.	19:30:12				445,500			445,500
9	2017. 2. 23.	19:31:03				616,000			616,000
10	2017. 2. 23.	19:31:32				616,000			616,000
11	2017. 2. 24.	13:31:56				445,500			445,500
12	2017. 2. 24.	13:32:34				616,000			616,000
계	12건					6,787,000			6,787,000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 “IV.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 따르면 동일 프로그램의 운영비(210목) 등 물건비(200목) 내 부족이 생겼을 경우 등에는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등의 비서실 기본 운영경비 등은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별 집행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비서실 운영경비 등 기타운영비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7. 1. 2. “**▣▣**”[카드가맹점명: (주)▣▣]에서 차[茶] 등을 구입하는 데 157,000원을 집행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7~2018년에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할 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서실의 다과, 물품 등 구입비용을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계 81건, 8,208,450원을 집행하였다.

[표 2] 비서실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현황(2017~2018년)

(단위: 건, 천 원)

집행 연도	위원장비서실		부위원장비서실		상임위원비서실 1		상임위원비서실 2		상임위원비서실 3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2	1,885	11	912	8	770	15	1,474	10	497	56	5,538
2018	17	1,876	4	480	2	127	2	187	-	-	25	2,670
계	29	3,761	15	1,392	10	897	17	1,661	10	497	81	8,208

주: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2017. 1. 1. ~ 2018. 12. 31. 각 비서실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임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 다. 건당 50만 원 이상을 분할 집행하여 집행상대방 미기재

예산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건당 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7. 3. 16. “2017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워크숍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 사용한 890,000원을 같은 날 20:04에 각각 450,000원과 440,000원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건당 집행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3건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2회로 분할하여 결제하고 집행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 3] 업무추진비 분할 집행 명세(2017~2018년)

(금액단위: 원)

연번	사용부서	카드 사용일	카드 사용 시간	서류상 집행목적 (사용자)	사용처	결제금액	실제 집행목적 (사용자)	실제 집행액
1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2017. 3. 16.	20:04	2017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워크숍 간담회비 (-)	○○○○	450,000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워크숍 (방통위 상임위원 등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 5명, 방통위 실무자 7명, 평창조직위 관계자 3명)	890,000
	운영지원과	2017. 3. 16.	20:04	외부전문가와와의 간담회 (-)		440,000		
2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2018. 8. 30.	08:46	국회 업무협의 (-)	○○(주)	390,000	당정협의회의 회의 (국회의원, 전문위원 및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방통위 위원장, 상임 위원, 사무처장 및 각 국과장 등)	630,000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2018. 8. 30.	09:12	하반기 현안관련 업무협의 (-)		240,000		
3	운영지원과	2018. 11. 12.	20:01	방통위 내부직원 등 격려 간담회 (-)	○○○	450,000	국회 예결위 대응 관련 간담회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각 국장총괄과장, 비서관, 재정팀 실무자 등 계 31명)	900,000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2018. 11. 12.	20: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소위원회 대응 (-)		450,000		
계								2,420,000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라. 사용제한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자료 미구비

예산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제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고, 사용제한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사용제한시간에 업무추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7. 1. 6. 23:36에 “[표 4]”에서 [표 4] FM 신규허가 심사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표 4]와 같이 6회에 걸쳐 계 495,800원의 업무추진비를 23시 이후에 집행하면서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6.~3. 26.) 중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4]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2017~2018년)

(금액단위: 원)

연번	사용부서	카드 사용일	사용 시간	사용처	집행목적	사용자	집행금액	심야집행사유
1	방송정책국	2017. 1. 6.	23:36	[표 4]	[표 4] 신규허가심사 관련 업무협의	-	100,000	[표 4] FM 신규허가심사 위원회 준비
2	혁신기획 담당관실	2017. 1. 12.	23:10	(주)○○○	2017~2021년 중기사업계획 계속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협의	-	146,800	2017~2021 중기사업 계획 계속사업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회의지연
3	방송기반국	2017. 5. 10.	23:41	(주)○○○	대선공약관련 내부업무 회의	-	91,000	이동시간 지연 등
4	운영지원과	2017. 5. 31.	23:17	(주)○○○	동호회 업무 관련 간담회	-	46,000	업무협의 지연
5	운영지원과	2017. 9. 12.	23:11	○○○	외부전문가 간담회	-	31,000	업무협의 지연
6	방송기반국	2017. 11. 4.	02:19	○○○	직원 격려	-	81,000	출발시간 지연 및 원거리 이동
계							495,800	

주: 연번 3, 6(계 172,000원)은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유로 감사 실시 전(2018. 10. 2.) 반납하였음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방통위는 「국고금 관리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집행 기준과 달리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관련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등을 위배하여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를 분할하여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달리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건당 50만 원 미만으로 분할 결제한 후 사실과 다르게 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주된 집행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제한 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보조금을 교부(2018년 282억 원)한 후 이를 정산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제2항 제2호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통위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환하거나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EBS에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

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게 집행하고 이를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방통위가 EBS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통위는 EBS가 2015년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권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 236,713,947원 등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 사업<sup>42)</sup>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계 3,123,267,626원을 당해 보조사업에 집행하지 않은 채 자체수익금으로 처리한 후 수익금 집행 현황이 포함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익금 집행 내역을 다시 받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을 정산한 후 확정하였다.

[표]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현황

(단위: 원)

구분	판매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제작연도						
프로그램 방송권	2015년		214,701,649	232,990,076	151,054,128	108,277,388	707,023,241
	2016년		-	174,015,316	594,172,132	294,243,156	1,062,430,604
	2017년		-	-	406,767,598	631,334,540	1,038,102,138
	소계		214,701,649	407,005,392	1,151,993,858	1,033,855,084	2,807,555,983
애니메이션	2015년		22,012,298	15,616,284	-	5,379,835	43,008,417
	2016년		-	16,234,287	56,512,858	1,915,042	74,662,187
	2017년		-	-	58,628,820	139,412,219	198,041,039
	소계		22,012,298	31,850,571	115,141,678	146,707,096	315,711,643
연도별 합계	2015년		236,713,947	248,606,360	151,054,128	113,657,223	750,031,658
	2016년		-	190,249,603	650,684,990	296,158,198	1,137,092,791
	2017년		-	-	465,396,418	770,746,759	1,236,143,177
	총계		236,713,947	438,855,963	1,267,135,536	1,180,562,180	3,123,267,626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42) 3년간 보조금 76,567백만 원 교부

그 결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지 않는 EBS의 기관운영경비 등에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EBS의 자체수익금으로 처리된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수익금을 당해 보조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EBS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방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가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방송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협찬고지 또는 방송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sup>43)</sup> 또는 가산<sup>44)</sup>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제1호 나목 및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방통위 지침,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위반행위자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번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43)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

44)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제6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

따라서 방통위가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제2항 [별표 2] 및 제6조 제6항에 따른 가중·가산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가중·가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가중·가산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통위는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방송법」 제74조 제2항에 정한 협찬 고지규정 위반으로 2017. 4. 4. 과태료(1,050만 원)<sup>45)</sup> 부과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7. 11. 위 회사가 다시 협찬고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제6항에 따라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525만 원)을 가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가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표]와 같이 2016년 이후 과태료 가중 또는 가산 대상인 3개 사업자<sup>46)</sup>에 대해 계 1,775만 원의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가산하지 않고 부과하였다.

[표] 과태료 미가중·미가산 내역(2016년 이후)

(단위: 원)

연번	법인명	「방송법」 위반내역	처분경력	위반일	처분일	과태료 가산가중 금액		미가산·미가중 내역
						정당가산가중 금액	실제 가산가중 금액	
1	(주) [OO]	제73조 제2항	2015. 11. 18. (8,000,000)	2016. 1. 30.	2016. 9. 1.	10,000,000	0	10,000,000원 미가중
2	(주) [OO]	제74조 제2항	2017. 4. 4. (10,500,000)	2017. 7. 11.	2017. 11. 29.	5,250,000	0	5,250,000원 미가산
3	(유) [OO]	제73조 제2항	2017. 4. 4. (5,000,000)	2017. 9. 17.	2017. 12. 29.	2,500,000	0	2,500,000원 미가산
계						17,750,000		17,750,000원 미가중·미가산

주: 1. 연번 1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3차 위반(2015. 5. 19., 2015. 5. 29. 위반경력 있음)에 해당하여 과태료 가중대상인데도 과태료 미가중

2. 연번 2~3은 직전 처분경력에 따라 과태료 가산대상인데도 과태료 미가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45)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자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최종부과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과태료 최종부과금액은 1,050만 원이나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840만 원임

46) (주) [OO]는 위반일(2016. 1. 30.)로부터 1년 이내에 3번째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기준금액의 100%(10,000,000원, 2017. 12. 27. 과태료 부과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 가중)를 가중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의견**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과태료 가중 또는 가산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가산하지 않는 등 과태료를 잘못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2017. 3. 24.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받은 후 2017. 3. 31. ㉠팀장 E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방심위가 2017. 3. 24.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문서(“2017년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 의뢰”)에 따르면 구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 도덕성 흠결 유무를 기재한 ‘현지 확인서’와 물의 야기 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자체 공적심사 전에 이와 같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

유를 엄밀히 조사하여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심위의 물품관리담당부서인 ★팀은 2017. 1. 2. ☆팀 직원으로부터 사무실 의자를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2017. 1. 9. CCTV를 확인하여 E가 사무실 의자를 무단반출(반출일시: 2016. 12. 31.)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팀장 F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E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처리방안 관련 논의가 보류<sup>47)</sup>되자 2017년 5월 중순경 E에게 본인의 자택으로 무단반출한 의자를 반납하도록 통보하고 회수하였다.

따라서 방심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E를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아야 하고, E에 대한 ‘현지 확인서’와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에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업무를 담당한 ★팀장 F는 E가 사무실 의자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채 E의 공적조서만 작성하여 2017. 3. 30. 인사위원회에 E를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대상자로 건의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심의와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E를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47) 방심위는 2018. 3. 30. E가 ① 사무실 의자를 자택으로 무단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② 청소년 방송모니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팀장)으로서 본인의 자녀 및 지인의 자녀 대신 청소년 방송모니터링 내용을 입력하여 우수 청소년모니터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③ 일반인 명의를 빌려 본인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해당 민원이 방심위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재를 받는 등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징계(징계종류: 해임) 조치

그리고 2017. 3. 31. F는 E가 사무실 의자를 무단반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현지 확인서’와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에 기재할 경우 E를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로 결정한 위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E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문서(제목: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7. 7. 7. 부도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E가 대통령포장을 받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방심위는 E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당시에는 E의 의자 무단반출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팀장 F는 E가 사무실 의자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인지한 후, 위원회 비품을 부적절하게 이동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E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E를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하면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서’와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에 E의 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E의 행위가 정부포상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방심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정부포상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6조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4조 제2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위임전결세칙」 제3조 [별표]에 따르면 팀장<sup>48)</sup>은 위원장 등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결재하거나 휴가 및 조퇴를 허가하는 등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심위는 「예산집행지침」(방심위 내부지침)에 따라 매월 팀장에게 직책급<sup>49)</sup>을 지급하고 있다.

48) 일반직 직원(1~7급) 중 실장·국장·센터장은 1~3급, 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함

49)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이와 같이 방심위의 팀장은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직책급을 수령하는 관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팀장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방심위는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급으로서 팀장을 맡고 있는 직원 39명에게 직책급 계 142,240,000원(1인당 연평균 365만 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계 309,240,000원(1인당 연평균 792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매년 관리자에 해당하는 4급 팀장<sup>50)</sup>에게 직책급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4급 팀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현황

(단위: 명, 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지급 인원	9	8	22	39
지급 금액	8,718	8,057	14,149	30,924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방심위는 4급 팀장의 경우 3급 이상 실·국장 등과 달리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출퇴근과 시간외근무 및 직무수행 등에 있어 소속 실·국장(1~3급)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급 팀장이 보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0) 3급 팀장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성과연봉은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방심위 사무처의 실·국장(1~3급)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세칙」 제14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4급 팀장이 소속 실·국장으로부터 출퇴근 현황을 관리·감독받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4급 팀장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다는 방심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4급 팀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 치 기 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용

### 1. 업무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2008년부터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관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서업무수행경비 중 기관업무추진비 90,884,320원을 집행하였다.

### 2. 판단기준

방심위가 매년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아 편성<sup>51)</sup>한 예산서에 따르면 관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표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기관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기관업무추진비는 방통위가 방심위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해 집행하도록 승인한 예산이다.

[표 1] 관서업무 수행경비 예산서 발취 명세(2016~2018년)

(단위: 원)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기관
세부산출내역	3,000,000×12개월	1,700,000×12개월	1,700,000×12개월	1,500,000×12개월	3,500,000×12개월
예산	36,000,000	20,400,000	20,400,000	18,000,000	42,00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51) 방심위는 매년 방통위에 세부실행예산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따라서 방심위는 기관업무추진비를 방심위 사무처의 각 부서에 배분하여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방심위는 [표 2]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관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 계 126,000,000원을 각 부서에 배분하지 않은 채 43.9%에 해당하는 55,294,136원은 위원장이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였고 28.2%에 해당하는 35,590,190원은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7.9%에 해당하는 35,115,674원은 방통위에 반납하였다.

[표 2]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16~2018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계	반납액
		명절선물 구입 등	위원장사용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	직원간담회 등	소계		
2016년	42,000,000	14,254,590	16,655,006	10,264,750	26,919,756	41,174,346	825,654
2017년	42,000,000	7,212,700	1,343,830	6,134,930	7,478,760	14,691,460	27,308,540
2018년	42,000,000	14,122,900	5,827,400	15,068,220	20,895,620	35,018,520	6,981,480
계	126,000,000	35,590,190	23,826,236	311,467,900	55,294,136	90,884,326	35,115,674

자료: 방심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관업무추진비가 방심위 사무처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집행되지 못한 채 주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방심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기관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배분하지 않은 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 치 기 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 용	

### 1. 업무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광고공사”라 한다)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이 커서 방송광고를 제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제작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2018년 사업비: 2,850백만 원)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 기업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sup>52)</sup>(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면서 광고제작비 검증을 위하여 지원협의회 위원 중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비 검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공사는 2018년에 3차례<sup>53)</sup>에 걸쳐 TV광고 지원대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라 한다) 등 TV광고 52개, 라디오광고 45개의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원하였다.

52)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사업 관련 과장,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관련 과장, 광고공사 지원사업 관련 국장, 중소기업 대표 2명, 광고계 2명, 학계 2명으로 구성됨

53) 1차(2018. 2. 28.) 34개, 2차(2018. 6. 18.) 14개, 3차(2018. 9. 14.) 4개의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함

##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지원 협의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의 결정으로 제척되고, 위원은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는 지원대상기업 신청기간(2018. 5. 25.~6. 27.) 이전인 2018. 4.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이하 “♣♣”라 한다)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2018. 9. 14.) 이후인 같은 해 10.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Y, 이하 “♠♠”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광고를 제작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광고공사는 지원대상기업인 ♠♠ 및 ♣♣와 각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와 ♠♠의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어 지원협의회 위원 위촉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광고제작비 지원대상기업 선정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고공사는 2018. 10. 12. ♠♠ 등 12개사 방송광고물 제작비 검증을 위한 2018년 4차 제작비 검증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원협의회 위원인 ♥♥ 프로젝트매니지먼트그룹 팀장 J를 일반 검증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J는 자신의 소속

사인 ♡♡이 ♠♠와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제작한 광고의 제작비를 검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고공사는 2018. 12. 20. ♣♣ 등 10개사 방송광고물 제작비 검증을 위한 8차 제작비 검증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원협의회 위원인 ♠♠ ♥팀 국장 K를 일반 검증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K는 자신의 소속 회사인 ♠♠이 ♣♣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광고의 제작비를 검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광고공사는 광고제작비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제작비 지원사업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기업이 계약한 광고회사 또는 제작사 소속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원대상기업과 이해당사자인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